

안심페이 서비스 계약서(사업자판매자)

______(이하 "갑"이라 한다)와 ㈜코스터(이하 "을"이라 한다)는 "을"의 안심페이 서비스(이하 "서비스"라 한다)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.

제 1 조 (목적)

본 계약은 "갑"이 "을"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지불 및 매입대행, 대금정산 및 기타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.

제 2 조 (용어 정의)

①상품: "을"의 서비스를 통해 대금지급이 발생하는 모든 유·무형의 재화와 용역

②고객: "을"의 서비스를 이용해 "갑"에게 상품 대금을 지불하는 자

③PG 사: 고객이 제시한 결제정보를 승인 처리하는 대행하는 기관으로서 각 결제수단별로 해당되는 신용카드사, 은행, 통신사,

전자화폐사, 상품권발행사, 포인트운영사, 기타 결제수단의 승인을 대행하는 기관

④결제수단: 신용카드, 가상계좌, 계좌이체, 휴대폰, ARS, 상품권, 교통카드, 포인트 등 "을"이 PG 사를 통하여 승인, 매입, 정산을 대행하는 모든 수단

⑤부가서비스: 현금영수증, 전자세금계산서, SMS, 이메일, 광고, 오픈마켓 등 "을"이 제공하는 결제서비스 이외의 모든 유·무상의 서비스

⑥승인: 고객이 제출한 결제 정보를 PG 사에 전달하여 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행위

(^)매입: 젓삿적으로 승인이 이루어진 건에 대해 PG 사를 통해 결제기관에 대금을 청구하는 했위

⑧정산: PG 사를 통해 결제된 결제금액을 담보로 결제금액 중 서비스 이용료 등을 차감하여 "갑"에게 지급하는 행위

⑨불량매출: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정상적인 대금 회수가 불가능한 거래

- 1. "갑"이 "을"에게 제출한 거래내역과 고객이 주장하는 이용내역 (금액, 상품명, 연락처, 사용처, 이용시간, 결제수단 등)이 상이한 거래
- 2. "갑"의 일방적인 상품 제공 중단으로 고객이 민원을 제기한 거래
- 3. 분실/도용 등의 사유로 고객이 거래를 부인하는 거래
- 4. 현금융통을 목적으로 한 거래
- 5. 관련법규, 결제기관 또는 PG 사에서 판매를 제한한 상품의 거래

제 3 조 (계약기간)

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간으로 하며, 만료 1주일 전까지 어느 일방의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본 계약은 1년씩 자동 연장된다. 단, 본 계약 제11조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렇지 아니하다.

제 4 조 (계약조건)

①<계약의 효력> 본 계약은 "갑"이 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 한해 유효하다.

②<거래한도> "갑"의 거래한도는 "을"에게 제출한 담보(현금/보증보험 등)의 총액을 근거로 "을"이 정한다.

③<계약조건의 변경>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"을"은 서비스이용료, 관리비, 할부가능개월, 담보조건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, 공지사항/유선/서면/이메일 중 하나의 방법으로 "갑"에게 통보한다. 변경된 조건은 본 계약서상의 계약조건에 우선한다.

- 1. PG 사가 제공하는 수수료나 입금주기가 변경되는 경우
- 2. "갑"의 판매형태, 판매상품, 업종 등이 현격히 바뀌어 계약조건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3. "갑"의 상점에서 발생한 거래의 건전도(판매단가, 할부개월, 고객의 연체율 등)에 변화가 있는 경우

제 5 조 (서비스 제공 시간)

①"을"의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되, PG 사의 시스템 운영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.

②"을"은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및 점검, PG 사의 사정에 의해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"갑"에게 사전 통지 후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. 단, 통신망 단절,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, 전쟁, 파업,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게시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.

제 6 조 (등록비/관리비의 청구 및 반환)

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"을"은 "갑"에게 등록비나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.

- 1. "갑"이 서비스 이용을 위해 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
- 2. "갑"이 중지된 서비스에 대한 재사용을 요청하는 경우
- 3. "갑"이 "을"에게 추가 계정 또는 추가 서비스를 요청할 경우
- 4. 기타 본 계약의 체결과 연장에 있어 "을"에게 별도의 비용이 발생되는 경우
- ②"갑"이 납부한 등록비는 "을"의 귀책이 없는 한 서비스 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환불하지 않는다.

제 7 조 ("갑"의 의무와 책임)

①<본인사용 확인 및 도용 방지> "갑"은 고객 본인의 거래 여부 및 결제정보의 진위 여부를 철저희 확인해야 하며, 타인의 개인정보



및 결제정보를 도용한 고객이 "을"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.

②<거래자료의 보관 및 전달> "갑"은 고객의 회원정보(성명, 연락처, 주소, 이메일주소 등)와 거래증빙 자료(송장, 주문내역서,

택배영수증 등)를 거래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한다. "을"이 고객의 확인, 추적, 채권환수 및 기타 업무상 필요에 의해 해당 자료를 요청할 경우 "갑"은 3영업일 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, 임의로 위조, 변조해서는 안 된다.

③<불량 매출의 확인> "갑"은 판매하는 상품과 판매방법에 있어서의 적법성 여부 및 불량매출 발생 여부를 항시 확인해야 한다.

④<환불 및 교환> 정당한 매출취소 사유로 고객이 환불이나 교환을 요구하는 경우. "갑"은 관련법규에서 정한 기한 내에 결제한 금액을 환불하거나 동일 수준의 상품으로 교환해야 하며, 본 처리와 관련한 제 비용은 "갑"의 부담으로 한다.

⑤<거래대금의 반환> 거래취소, 과·오지급 등의 사유로 "갑"이 "을"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"갑"은 사유 발생즉시 이를 "을"에게 반환해야 하며, "갑"의 고의적인 대금 반환 지연시 사유 발생일로부터 법정 이자가 가산된다.

⑥<시스템의 설치 및 확인> "갑"은 서비스의 이용을 위해 "을"이 요구하는 장치 및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며, 올바른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.

⑦<변경사항의 통보> 본 계약서 제출 이후 "갑"의 개인 및 사업자정보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"을"에게 통보해야 하며, 통보불이행에 따른 모든 피해는 "갑"의 책임으로 한다.

⑧<매출 신고의 의무> "을"이 "갑"을 대신하여 PG 사를 통해 승인 및 매입대행의 업무를 수행한 매출은 "갑"의 매출로 귀속되며, "갑"은 관련법에 의거 매출신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.

⑨<배송지연사유 고지의 의무> "갑"은 상품 판매일로부터 3일 이상 상품제공이 지연되는 경우 고객에게 배송(서비스) 지연 사유를 반드시 유선으로 고지해야 한다.

제 8 조 ("을"의 의무와 책임)

①<시스템의 운영> "을"은 계약기간 중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한다.

②<법령의 준수> "을"은 전자상거래 및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상의 제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.

제 9 조 (정산)

①"을"은 PG 사를 통해 결제된 결제금액을 담보로 부가세를 포함한 서비스 이용료를 공제하여 "갑"의 계좌로 정산금액을 지급한다.

②정산은 금융기관의 영업시간 내에 이루어짐을 원칙으로 하며, 비영업일은 정산일 기산 시 포함되지 않는다.

③"을"은 "갑"으로부터 선취 또는 후취한 모든 수수료, 등록비에 대해 월1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.

④"갑"에게 지급될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차회 정산에 합산하여 그 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시점에 지급한다. 단. "갑"이 요청하는 경우 "을"은 10만원 미만 정산대금에 대해 이체수수료 500원을 공제 후 지급할 수 있다.

제 10 조 (서비스의 중지 및 재사용)

①"갑"이 90일 이상 서비스를 이용치 않은 경우 "을"은 "갑"의 동의 없이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다.

②"갑"이 "을"이 청구한 비용을 미납한 경우 "을"은 "갑"에게 유선/이메일/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보 후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다.

③"갑"이 서비스의 재사용을 원하는 경우 ①항의 서비스 중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"을"이 정한 방법에 따라 재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 11 조 (계약의 해지)

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어느 일방은 유선 혹은 서면통보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①"갑" 또는 "을"이 본 계약 및 관련 약정사항을 위반한 경우

②"갑"이 제공한 상품에 대해 고객의 불만이 다량 발생하여 더 이상의 정상적 거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③"갑"이 고객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법 또는 부정한 매출을 발생시킨 경우

④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의 신용 거래분에 대해 대금연체가 대량 또는 빈번히 발생하여 더 이상의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⑤"갑" 또는 "갑"의 대표자의 신용정보에 불량기록이 등재하거나, 신용이 현저히 악화되어 더 이상의 정상적인 계약 유지가 힘들다고 판단되는 경우

⑥"갑"이 "을"에게 통보하지 않고 사업자 정보를 변경하거나, 서비스 계정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

⑦"갑"의 일방적인 연락두절 및 상점폐쇄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 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되는 경우

®"갑"이 제공하는 상품이 관련법규 및 카드사 가맹점규약에 어긋나거나,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

⑨제3자로부터 소송, 가압류, 가처분 등이 제기되거나 제기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

⑩PG 사, 금융기관, 통신사, 정부기관 등에서 "갑"에 대한 서비스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

⑪제11조 ①항의 서비스 중지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된 경우

⑩"갑"이 7조 ⑧항의 매출신고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

⑬"갑"이 7조 ⑨항의 배송지연사유 고지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

⑭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거나, 상대방의 명예나 신용을 실추시킨 경우

제 12 조 (불량매출의 처리 및 담보금 설정)

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"을"은 거래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보류하거나 거절할 수 있으며, "갑"의 동의없이 매출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1."갑"의 거래 전부 또는 일부가 제2조 ⑨항의 불량매출로 판단되는 경우

2.대금 지급 1영업일 전까지 "갑"이 고객에게 상품 제공을 완료치 않거나, 3일 이상 서비스 및 상품배송지연시 그 사유를 고객에게



유선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

3. "갑"이 상품 제공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"을"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한 경우

4."갑"이 사업자정보 및 연락처의 변경 사실을 "을"에게 통보하지 않거나, 일방적인 연락거부, 사업장폐쇠, 휴·폐업 등 정상적인 사업 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되는 경우

5. "갑"이 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

6.휴대폰결제를 이용한 고객이 통신사로부터 청구된 요금을 미납 또는 지연 납부하거나, 대금 청구 전 취소하여 통신사로부터 "응"에게 해당 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

7."갑"의 건별 결제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매출 300만원 초과시 안심페이 결제이용신청서상 기재된 보증보험가입이 불가한 경우

8.기타 본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"갑"에게 "을"을 채권자로 하는 채무가 발생하거나 "갑"의 고객으로부터 발생한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

②"을"은 전항의 처리와 관련하여 채권이 발생하는 경우 "갑"에게 기지급 대금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차회 정산 대금에서 해당 채권을 상계할 수 있으며, 고객 민원 처리와 관련 발생 예상되는 채권 및 제 비용의 보전을 위해 지급 보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담보금 용도로 전용할 수 있다.

③"을"은 불량매출 사유가 소멸되지 않을 시 고객 및 "을"에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"갑"에게 추가적인 담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, 담보의 형태와 액수는 "을"이 정한다.

④"을"은 발생한 채권에 대해 "갑"이 제출한 담보금에서 우선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.

⑤"갑"은 "을"에게 설정한 담보금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 재설정 등을 할 수 없다.

제 13 조 (민원의 처리 및 거래취소)

①고객이 제기한 민원의 귀책사유가 "갑"에게 있는 경우 "을"은 "갑"에게 공지사항/유선/서면/이메일 중 하나의 방법으로 해당사실을 통보하고, "갑"은 이에 대해 3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"을"에게 통보해야 한다.

②"갑"은 고객 및 "을"의 거래 취소 요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, 결제수단별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른다.

1. 신용카드결제는 각 카드사가 정한 취소 가능 기간 내에 처리한다.

2.휴대폰결제의 취소는 해당월 경과시 "갑"이 고객에게 직접 환불함을 원칙으로 하며, "을"은 결제완료에 따른 수수료에 대해 반환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.

3.기타 결제수단의 거래취소는 "을" 및 해당 결제수단의 결제기관 또는 PG 사가 정한 방법을 따른다.

③ "을"이 접수한 민원의 사유가 제2조 ⑨항에서 정한 불량매출인 경우 "을"은 해당 거래금액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정산대금에서 차감할 수 있다. 정산대금이 부족하거나, 본 계약 해지 이후 발생한 민원에 대해 "을"은 "갑"에게 해당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.

제 14 조 (책임의 귀속 및 손해배상)

①"을"의 서비스가 종료된 이후라도 고객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판매자의 배달확인 의무 미이행. 구매자 정보의 부실에 따른 불법적 타인의 지불정보도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"갑"의 책임 하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.

②상품하자, 배송착오, 고의적인 반품거절, 서비스 미제공 등 "갑"의 과실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, "갑"에게 업무를 위탁한 업체와 고객간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은 "갑"에게 있다.

③"갑"은 "을"이 제공한 시스템을 임의로 변경 또는 수정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진다.

④"갑"과 "을"은 계약기간 동안 획득한 고객의 정보와 결제정보를 본 계약상의 업무 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 또는 유출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은 물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.

⑤기타 본 계약을 이행하면서 발생되는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은 귀책소유자의 책임으로 한다.

제 15 조 (소유권 및 계약의 양도)

"을"이 "갑"에게 제공한 서비스의 모든 구성요소는 "을"의 소유이며 "갑"은 "을"의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매매. 임대. 증여, 담보제공 및 타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

제 16 조 (분쟁의 조정)

본 계약에 대한 이의 발생시 "갑"과 "을"은 관계 법령 및 상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호혜적 차원에서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함 때는 "을"의 소재지 관합법원의 결정을 따른다.

제 17 조 (고객의 결제금액 수납율과 관련한 특칙(휴대전화 결제))

①"을"은 "갑"에게 선 지급한"정산금액"과 관련하여 "이동통신사"등으로부터 장래에 수납될 "정산금액"이 고객의 통신요금 미납/체납으로 손실이 발행 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할 수 있다.

1."갑"과 "을"은 이용요금에 대한 수납율을 (99)%로 협의한다.

2.이용요금에 대한 수납율이 (99)%에 도달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"갑"에게 있다.

3."을"은 수납 12회차(M+7월)까지 "이동통신사"로부터 수납되는 이용요금의 수납율이 상기 수납율에 도달 하지 못하여 "을"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, "갑"과 "을"간 체결된 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모든 "정산금액" 및 기타 채권 등에서 차감 또는 상계하고 정산한다.

4."을"은 계약이 해지되었거나, 차감/상계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 "갑"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.

②이동통신사로부터 수납되는 이용요금에 대한 수납율이 통상적인 평균수납율에 미치지 아니하여 본 조항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목표수납율에 미치지 못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. "을"은 "갑"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고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.



"갑"은 "을"이 협의를 요청할 경우에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.

본 조 2항과 관련하여, 수납 1회자의 수납율이 40%이하인 경우에 "을"은 자신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"갑"에 대한 정산대금의 지급을 일방적으로 보류할 수 있다.

"갑"과 "을"은 본 계약의 증명을 위해 계약자 정보 기입 후 상호 서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 년 월 일

* 안심페이 회원가입날짜를 입력해주세요

| (갑) | 상 호: | | - | |
|-----|-------|-----|---|--|
| | 주 소: | | | |
| | 대표자 : | (인) | | |

(을) 상 호 : ㈜코스터

주 소 :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401, 비동 506호 (가양동 강서한강자이타워)

대표이사 : 장 인 석